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6. 27.(화) 10:0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 · 재무위원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전문위원 장 석 현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3 - 61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3년 6월 1일

라.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2. 개정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내에 "만"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 삭제(안 제1조 ~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제1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각 조례 소관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효율성¹⁾을 고려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¹⁾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u>비교적</u>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조례 개정의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됨. 그리고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정·비능률성을 야기함

붙임1 개정 조례 정비내역

연번	해당부서	자치법규명	해당 조문
1	감사담당관		제6조(위·해촉)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강서구에 두고 있는 자
2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 례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객
3	문화체육과	육시설의 설치 및 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 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 프로 ·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6.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4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	- 11 "정년"이란 말 19세 이상 39세
5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수강료 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수 있다. 6.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이상인 부,모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6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청년시설설치및운영등) ④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10.2.2)
7	자원순환과		제5조(지원대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8	생활보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 소득주민 국민건강보 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 만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지원대상)보험료 지원대상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
9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 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만 65세가 되는
10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 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비 라한나)란 나사녀가성의 반 5

11	가족정책과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 6. 어르신(<u>만 65세</u> 이상)
12	어르신복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한다)에 주소를 가진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3	보건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 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임시예방접종) ①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13세이상)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수급자(만 50세이상)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만 50세이상)

붙임2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u>다른 법령등에</u>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u>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u>.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